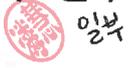


제22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7 월 11 일

여 수 시 장 차경기



여수시 조례 제1918호

붙임 여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1918호

여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시행규칙)를 제20조로 조문이동하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포상) 시장은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단체 또는 기업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9조(포상) 시장은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단체 또는 기업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p> <p>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